

7. 에너지진단 연기

● 진단연기

- 진단주기 내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내에서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 - 천재 · 지변 · 부도 · 폐업 및 휴업으로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
 - 행정처분 · 노사분규로 일시적인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
 - 고장 또는 대수리, 공정변경 및 증설로 대상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할 수 없는 경우
 -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
 - 당해연도 에너지진단 신청이 진단기관의 수행능력을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

● 연기신청

- 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연기신청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연기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.

Check Point

- ▶ 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.
- ▶ 연기신청시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.

8. 에너지진단 면제 및 진단주기 연장

● 에너지진단 면제란?

- 1회 진단주기(5년,3년) 동안에 에너지진단을 면제받는 것으로,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개최하는 『에너지절약 촉진대회』에서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1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진단주기 연장이란?

-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받는 것으로,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회 선정에 1년을 연장 받고, 에너지절약 유공자 중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한 사업장은 3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에너지절약 유공자와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Check Point

▶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년도 말까지 공단에 면제 또는 연장 신청을 하여야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9.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

● 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

-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,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진단비용(진단 등급 C급)을 기준으로 비용의 70%(2007년)가 지원됩니다.
- 당해 년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.

※ 진단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며,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● 신청절차

-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,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※ 중소기업 증명서류

-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지정 또는 확인한 서류 (벤처중소기업 확인서,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)
-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

-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자가 진단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을 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

그동안 참고서 한 권 없이 고민 많으셨죠?

에너지 경제, 정책, 제도, 기술, 관리를 총망라한 **‘에너지총설’**이 해결해 드립니다.

**차재호 박사외
13명의 박사
집필**



- 정근모박사 전 호서대학교 총장 • 김호탁박사 서울대학교 교수
- 김호기박사 포항공대 교수 • 이경희박사 연세대학교 교수
- 정장섭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• 권영환박사 한국전기연구원 원장
- 손재익박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

에너지총설!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.

- ▶ 매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하신 분!
- ▶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!
- ▶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!
- ▶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, 학생, 공학 엔지니어들!
- ▶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!
- ▶ 현장 에너지관리자 여러분들!
- ▶ 기계설계사무소 여러분들!

에너지 경제 · 정책 · 제도 · 기술 · 관리 大百畵

에너지총설

에너지총설 / 상하권 / 약 1,700여쪽 / 양장 / 정가 130,000 (상권 55,000 / 하권 75,000)

※ 「에너지총설」은 교보문고,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들과 Yes24, 알라딘, 모닝365, 리브로 등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

KOREA ENERGY INFORMATION CENTER
한국에너지정보센터

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-7 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www.energycenter.co.kr
T.(02)2679-6464 F.(02)2632-7566 E-mail : w3master@energycenter.co.kr



in the world



Combined Heat and Power from Natural Gas

국내 최대실적, 최고의 신뢰

방방곡곡에서 MDE 열병합발전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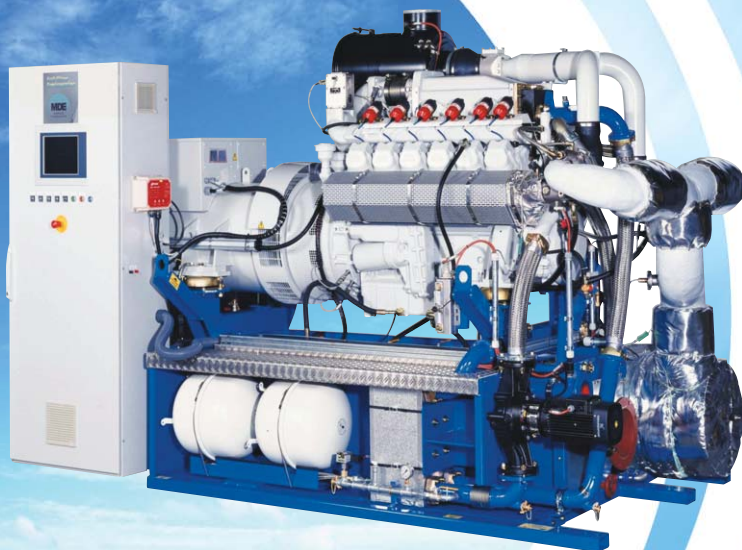
MDE Dezentrale Energiesysteme GmbH

Intelligent Solutions for High Efficient CHP-Systems



Combined Heat and Power from Natural Gas

MDE



MODEL : ME3066D1(128kw), ME3066L1(182kw), ME3042D1(248kw), ME3042L1(356kw)
ME3042ZH2(404kw), ME70112Z1(1150kw), ME70116Z1(1536kw)

MDE 열병합 발전기 시스템은

- 에너지종합 효율 90%이상 및 국내 NOx 및 환경규제치를 준수하며 열병합 도입현장에서 그 성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고 있습니다.

MDE와 하나인터내셔널은

- 기존의 축적된 고객과의 신뢰를 이어 갈 것이며 여러분의 열병합 시스템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금년부터 MMC Control 방식 채택 ; Touch 방식, 원거리 Control, Up Grade 기능

국내 공급 제품 범위 100kW ~ 1550kW / 사용 가스 종류 : LNG, 바이오가스, 폐가스, 매립지가스 /

독일 TEST BED 시운전을 거친 제품 / 국내 시운전, 유지관리 및 전국 24시간 내 서비스 처리 시스템 확립

독일 MDE사 파견 엔지니어링 및 MDE사 기술 자격증 소지 한국인 엔지니어의 철저한 서비스



MDE 국내 판매 및 A/S대리점-국내 판매수량 80대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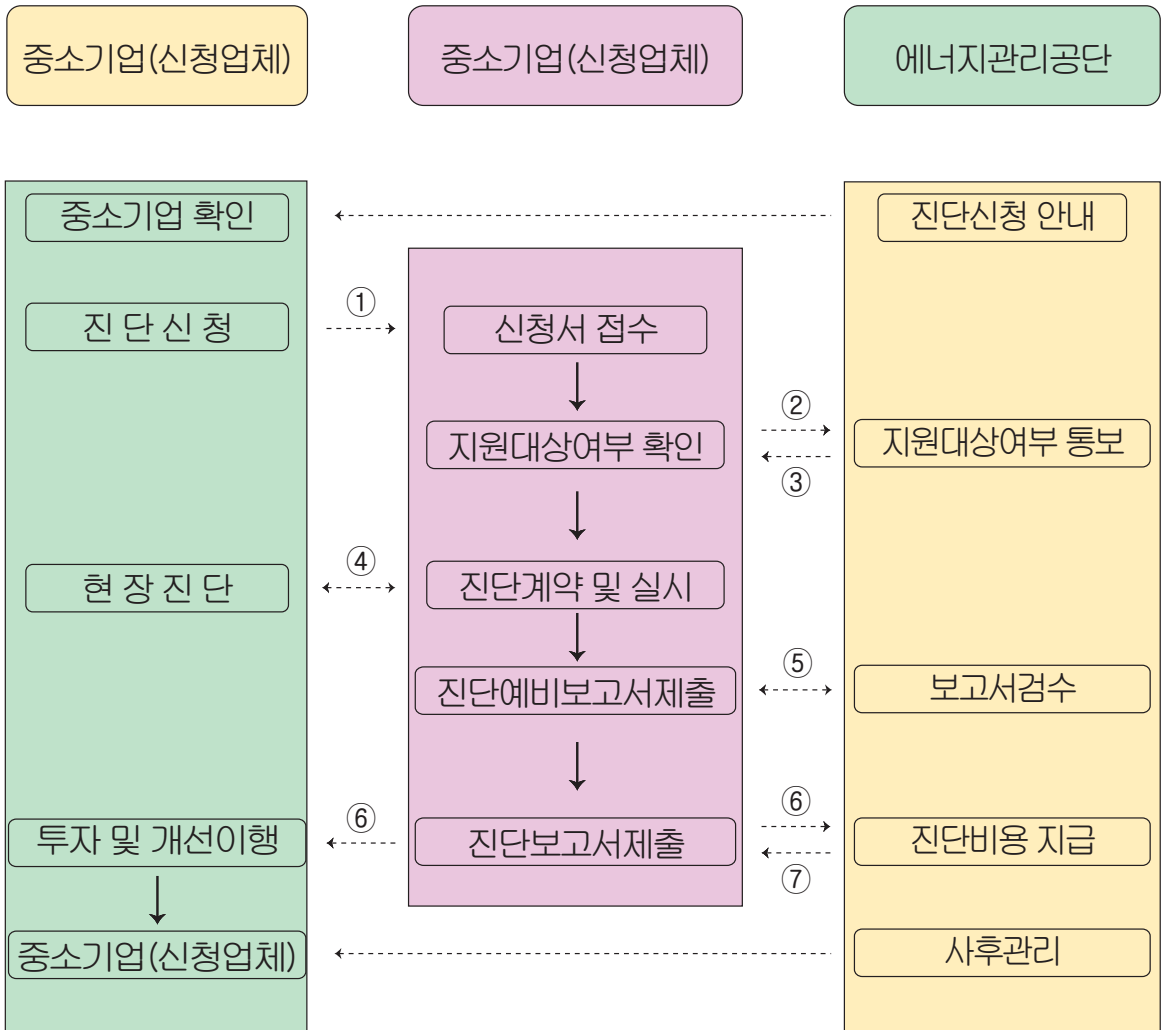
하나인터내셔널

•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-1 금강하이테크밸리 814호

• TEL : 031.777-5050~2 FAX : 031.777-5053 <http://www.hanapark.co.kr> E-Mail : hanaint@hanapark.co.kr

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의 개요-2

●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



Check Point

- ▶ 진단비용지원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,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신청서에 반드시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,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▶ 진단비용지원은 정부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,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▶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원비율은 향후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,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중소기업은 조기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10.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

● 진단기관

-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 이상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

● 지정신청절차

1. 보유 장비와 기술인력에 따른 진단등급, 업종 등 신청인의 진단사업 수행능력을 고려한 업무 수행범위 등을 공단과 사전 협의
2.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지정신청
 - 사업계획서
 - 보유장비명세서
 - 기술인력명세서(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포함)
3.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한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
4.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발급

● 변경지정

-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장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[별표 4] 「진단기관의 지정기준」에 명시하고 있는 측정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, 각 목별로 장비를 해당대수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.

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의 개요-2

- 1대의 장비가 2종류 이상의 기능이 있더라도 한 항목의 장비로만 인정하게 됩니다.
※ 기술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에 상근하고 있음을 의료보험가입증명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1인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1종류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인정합니다.

Check Point

- ▶ 기술인력은 지정기준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진단기관의 지칭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함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11. 과태료 부과

-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규칙」 제26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<과태료의 부과기준>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	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위반
1. 법 제 24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	법 제100조 제1항	1천만 원	2천만 원	2천만 원	2천만 원

-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가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.

※ 대상설비의 가동 중단, 노사분규, 대수리 등 진단주기 내 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.

12.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자금지원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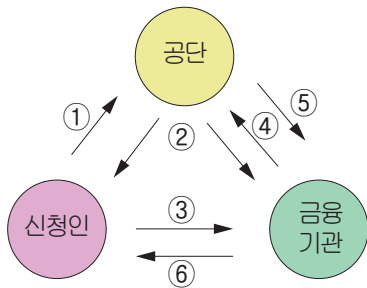
● 지원 내용

-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가 5%(전기설비는 3%)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, 공정 및 건물 등을 개체, 개·보수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3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

- 진단 받은 시설, 공정 및 건물의 개체, 개·보수 및 개선을 위한 투자비와 기술개발비 등

• 소요자금의 80%이내, 변동금리 적용,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
● 지원 절차



- ① 추천신청
- ② 자금추천통보
- ③ 대출신청
- ④ 대여신청
- ⑤ 대여
- ⑥ 대출실행

Check Point

- ▶ 융자지원이므로 금융기관 대출규정(신용, 담보)에 적합해야 대출 가능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▶ 자금지원 문의 ->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031-2604-362~5

13. 에너지진단 상담 및 안내

● 관할지사

지역	전화번호	지역	전화번호	지역	전화번호
서울	02) 862-5201~2	광주·전남	062) 223-2361	충북	046) 296-0363-4
부산·울산	051) 503-7741	대전·충남	042) 527-6954-5	전북	063) 211-7089
대구·경북	053) 742-0366	경기	031) 260-4618	경남	055) 299-1361
인천	032) 420-0712	강원	033) 242-0367	제주	064) 747-0365

● 에너지진단전문기관

- 지정 진단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상시공개

● 컨설팅지원실

- 에너지진단 관련 문의 전화 -> 031-260-4441~5 • 팩스 -> 031-260-4449 • 홈페이지 -> <http://www.kemco.or.kr>